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관계 자료를 과세자료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 대상 추가에 따라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과세자료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개선(안 제39조)

납세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안 제74조 별표3)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안 제74조 별표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중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을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관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 중 해당 관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방세환급금의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할 것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할 것

⑥ 제5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

자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선불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별표 3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6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외국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매일
307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행정안전부	매월 5일
308	「순환경제사회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신고 및 부과에 관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행정안전부	매년 5월 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u>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u>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입금하는 방법-----.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 중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
<신 설>	

<신 설>

⑤ · ⑥ (생 략)

할 수 있는 지방세환급금의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
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금액 이하일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
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
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할 것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선불전자지
급수단으로 지급할 것

⑥ 제5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전
자금융업자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선불지급수단 지급확인통
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지급수단 지급확인통
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1